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

2023.1



C/O/N/T/E/N/T/S

PART	1	서문	1
PART	2	컨설팅 지원사업	2
		1.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환경경영, 온실가스, 환경오염) ..	3
		2.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온실가스 감축)	10
PART	3	예산 지원사업	14
		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온실가스 저감 설비(필수)+환경설비) ..	14
		2.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환경설비)	19
		3.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온실가스 저감 설비)	24
		4.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온실가스 저감 설비)	49
		5.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사업(온실가스 저감 설비, 융자)	57
		6.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융자)	69
		7. 미래환경육성융자(녹색전환)(환경설비, 융자)	70

1 서문

ESG는 기업경영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업이 외부에 지속가능한 기업임을 설명할 수 있는 경영방식입니다.

* 예시 : 사업장 온실가스·환경오염 저감, 임직원·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경영, 조직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방식 등

최근 EU의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부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 등 국제적인 규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의 ESG 경영에서 더 나아가 납품업체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투자사들도 투자시 대상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ESG 경영(ESG 관련 설명, RE100 요구, 온실가스 또는 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ESG 경영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환경분야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각 사업별 주요내용 및 문의처 등을 담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컨설팅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컨설팅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23년 22.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공급망 중소기업 환경경영 수준 진단, 환경배출 현황 진단·목표 수립 컨설팅 진행 등
	탄소중립 컨설팅 ('23년 4.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방안 도출 등
예산 지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23년 90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최대 10억, 중소기업 60%·중견 50%)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종합 환경개선 지원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23년 13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모든 기업 가능 (공급) 환경신기술 보유 업체(중소 70%, 중견 50%) 수요기업의 환경개선에 혁신 녹색신기술 적용시 기술 공급 기업의 비용 보조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23년 1,31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30~70%) (상생프로그램) 할당대상업체 중 민간기업(대기업 가능)(50%) (연료전환) 할당대상업체 중 집단에너지 사업자(중소·중견)(50%)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비용 지원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지원 ('23년 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관리업체 중 중소기업(50%)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비용 지원
	친환경설비투자(유자) ('23년 1,0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최소 1천만원~최대 100억) 국내외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설비 시설·운영 비용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유자) ('23년 242.5억원) * 유자규모 3.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당대상업체·목표관리업체 등(대기업 가능) * 취급은행 : 산업은행, 신한은행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설비 시설 비용
	미래환경산업육성유자 (녹색전환)(유자) ('23년 1,0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최소 1천만원~최대 100억) 사업장의 녹색전환 자금 시설 비용

2.1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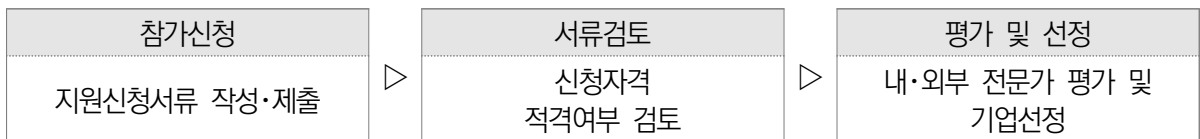
- 환경경영 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환경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ESG 컨설팅,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ESG 컨설팅) 환경경영 체계 구축,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원 절약 등
 - ※ 환경부와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회·단체·기업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일반기업 모집(일반전형) 동시 진행
 - (시스템) 환경 규제 대응 및 자원·에너지·환경오염물질 자체 관리 지원
- (지원규모) ESG 컨설팅 75개사 내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25개사 내외
 - ※ '23년은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및 '22년 업무협약에 따른 표면처리 공업협동조합 대상 컨설팅 진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월 19일 ~ 2월 28일



- (신청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sujung@keiti.re.kr) 제출
 - 컨설팅을 제공할 환경컨설팅회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로 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TF

(☎ 02-2284-1961, 1963, 1968, kokyuwuong@keiti.re.kr)



참고 1 지원 신청서

2023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참여 신청서(시범사업)

※ 협약 협회·단체·기업이 대표로 작성

신청부문 : 협회 / 단체 / 기업 중 택1

협약 협회 단체 기업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수행책임자	성명			전공	
	소속			직위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E-mail	
참여 기업 (개 사)	기업명 작성				

2023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본 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참여제한 여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사업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첨부 : 1. 사업계획서
 2. 협약 협회·단체·기업 및 참여기업 현황
 3. 환경부와 체결한 ESG 경영 지원 관련 업무협약서(사본)
 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5.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2023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협약 기업·협회 (대표)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사업계획서

○ 컨설팅 필요성

※ 필요로 하는 컨설팅 분야에 대한 업계, 기업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컨설팅 추진의지 기술

○ 사업참여 목표 및 사업 컨설팅 희망 주요 내용

※ 사업 추진의 목표(성과지표) 및 도달수준 등을 기술
※ 협회·단체·기업별 사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요 내용 기술

○ 사업 기대성과 및 활용 계획

※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정량적 및 정성적인 효과를 기술



협약 협회·단체·기업 및 참여기업 현황

가. 협회·단체·기업

법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법인설립일	
법인가분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비상장법인(), 기타()		
매출액('21년 기준)	억원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업종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주요생산품(기술)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주 생산품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정규 종업원 수	명 ('22.12 기준)
회사연혁	※ 설립이후 주요변경 연혁(법인상호변경 등)		
본사주소			
공장주소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부 서	
	전 화	F A X	
	E-mail	휴대전화	

나. 참여기업 ※ 참여기업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법인번호		법인설립일	
법인가분	코스닥(), 코스피(), 비상장법인(), 기타()	기업규모	중소(), 중견()
매출액('21년 기준)	억원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업종		주요생산품(기술)	
주 생산품		정규 종업원 수	명 ('22.12 기준)
회사연혁	※ 법인상호변경 연혁		
컨설팅 필요성			
컨설팅 목표 및 주요 요구사항			
컨설팅 기대효과			
본사주소			
공장주소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부 서	
	전 화	F A X	
	E-mail	휴대전화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2023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협약 협회·단체·기업 명		수행책임자																																		
<p>위의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위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 년 월 일</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thead> <tr> <th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참여기업 명)</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대 표)</th> <th style="width: 35%;"></th> </tr> </thead> <tbody>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r> <td>_____</td> <td>_____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서명)</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p>				(참여기업 명)	(대 표)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참여기업 명)	(대 표)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2023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참여 신청서(일반전형)

		신청부문		일반전형	
신청기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홈페이지	
	업종			주요고객사	대기업 협력사일 경우 매출액 비중이 제일 큰 기업
	기업규모	중소(), 중견()		연매출('21년)	
	주 생산품			직원수	명 ('22.12 기준)
	사업장주소				
수행책임자	담당자명			부서	
				직위	
	연락처	전화(사무실)		휴대폰	
		Fax		E-mail	
회사연혁	※ 법인상호변경 연혁				
컨설팅 희망 세부분야	[예시] ESG교육, 공정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공급망 실사 대응 등				
<p>2023년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본 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참여제한 여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사업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p> <p>첨부 : 1. 사업계획서 2.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행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기업 대표이사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p>					



사업계획서

○ 컨설팅 필요성

- ※ 필요로 하는 컨설팅 분야에 대한 기업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컨설팅 추진의지 기술
- ※ 공급망이나 글로벌 환경규제 등을 고려하여 ESG 대응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사업참여 목표 및 사업 컨설팅 희망 주요 내용

- ※ 사업 추진의 목표 및 도달수준 등을 기술
- ※ 사업 지원을 통해 필요로 하는 주요 내용 기술

○ 사업 기대성과 및 활용 계획

- ※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정량적 및 정성적인 효과를 기술



2.2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 추진배경

- 사업장별 기술진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감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3년 40개 사업(480백만원)
- (지원내용)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 진단
 -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분석
 -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감축기술 발굴
 -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산정, 시설투자 및 비용절감액 등 사업효과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월 9일 ~ 2월 10일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 032-590-5649)

참고 1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
	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⑦ 기타 공정개선	•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
	전력 절감 설비	⑧ 인버터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⑩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교반기, 모터, 버너, 변압기, 팬, 펌프, LED 조명 등) ※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 타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참고 2 지원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신청서			
기본정보	업체명		업체 코드
	사업장명		사업장 코드
	업종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사업장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이메일		담당자연락처
신청정보	컨설팅 희망일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yr)	사업장 배출량
	주요공정·원료사용량		
감축설비정보	컨설팅 요청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배출시설, 용량, 대수, 내용연수, 배출량 등 설비정보 2. 사업장 현황 및 요청사항 등 기재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설비(온실가스 감축 방법 설명) 4. 모니터링 설치 유무(계측기 설치 유무) 5. 해당 설비의 감축효과 기재(생산효율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결과 등) 6. 그 외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 		
	투자계획 및 기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계획 2. 기타 참고사항 		
	<p>※ 필수서류: 기업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첨부서류로 제출</p>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참여여부		○ / ×	
<p>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업체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탄소중립설비 기술진단 컨설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탄소중립 기술진단 컨설팅 신청 및 지원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탄소중립 기술진단컨설팅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기술진단 컨설팅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업체 (직인)



3.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 추진배경

- 2030 NDC* 및 ESG 의무화 국제동향**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의 온실가스 저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 * 2030 NDC에서 산업부문은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에 222.6백만톤으로 감축 필요(△14.5%)
 -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안)' 발표('22.2.), 미국 SEC 탄소배출량 공시(Scope3) 의무화 추진('22.3.) 등
- 생산품의 공급망까지 ESG 경영 요구 확대,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지원으로 ESG 경영 기반 지원 필요
- 업종·규모별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체계의 롤 모델 제시, 제조업의 녹색전환 지원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가점부여)
- (지원내용) ① 온실가스 저감 설비비 및 환경관리설비 변경 비용 지원, ② 온실가스 저감효율 극대화 및 환경관리 최적화

※ (지원분야) ①온실가스저감 ②ICT설비 구축(오염물질 측정) ③대기오염물질 저감 ④수질오염저감 ⑤폐기물저감 ⑥자원순환증가 ⑦환경보건개선(악취, 소음, 진동 등)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 시스템 (①, ②를 포함한 최소 3개 분야 선택 필수)

- (지원금) 총 9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억원, 중소60%, 중견50%)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월 19일 ~ 2월 28일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메일(factory01@keco.or.kr) 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ESG기업지원부 (☎ 032-590-4804, 4833)

■ 참고사항 : 네이버, 유튜브에서 '스마트 생태공장' 입력시 사업 소개 및 참여요건 등 안내

참고 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신청서(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설치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시설이 설치될 해당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		업 종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컨설팅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사업현황	협약기간	. . . ~ . . . (개월)		예상효과	
	총사업비(비율)	정부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100%)	천원 (%)		천원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업 대표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margin-top: 20px;">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p>					
<p>첨 부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1부.</p>					



사업계획 요약

사업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실가스 저감 <input checked="" type="checkbox"/> ICT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 저감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 저감 <input type="checkbox"/> 폐기물배출 저감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input type="checkbox"/> 환경보건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상기 8개 분야 중 의무선택 2개 분야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 필수) <hr/>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시스템(스마트공장)
신청기업		과제명	※ 사업목표와 달성방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계
금액(천원)			(현금)	
			(현물)	
비율(%)	100		(현금)	민간 부담금 기준
			(현물)	

※ 환경부 지원범위의 해당사업비만 작성(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비는 제외)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 목표
 -
 -

(지원 분야별 사업목표를 정량적(%수치 등)으로 간략히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5. 예상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참고 2 증빙서류 종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 원본 제출
3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제출
4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원본 제출
5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 사본 제출
6	고용 증빙 자료	• 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제출 대상 : 사업비 중 인건비 계상 과제)
7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증서
8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증빙 서류 가능
9	가점 현황 증빙 자료	• 가점 해당 시 제출
10	시설 주요구성 자료	• 사업부지 내 설치장소를 포함한 개략도
11	시설의 사양 파악 자료	•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
12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및 증빙서류	•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내역서 등 저감효과 산출자료 • 기존 오염물질 배출 현황 자료 - 공인기관이 발급한 오염물질 배출 성적서 및 Allbaro 폐기물관리 시스템 출력자료 등
13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 주요 설비별 금액이 포함된 견적서 -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설비는 비교견적 포함 제출
14	〈별첨 14〉 신청기업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15	〈별첨 15〉 신청기업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16	〈별첨 16〉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 사업 참여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점검하는 서류
17	〈별첨 17〉 안전보건서약서	• 원본 제출
18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 실적
19	환경법적기준 준수 증빙서류	• 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자료 - 지도점검 결과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최근 6개월간)
20	‘스마트 생태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진계획서(요약)	• 사업 홍보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참고 3 **관련서식**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1. 과 제 명 :
2. 지원기업 :
3.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위 : 천원)

민간부담금 총계(A+B)			
현금 부담금액 및 일자	금액(현금)(A=C+D)	선금(70%이상)(C)	잔금(30%이하)(D)
	부담일자	협약 체결 전 입금	중간점검 이후 30일 이내
현물 부담 금액	금액(현물)(B) ※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0 년 월 일

지원기업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3.2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추진배경

- 기업들은 녹색혁신 신기술 개발 이후 **실규모(full-scale) 실증데이터 부족**으로 시장진출에 애로 ⇒ **실규모 실증데이터 확보** 지원
 - ※ 녹색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에서 파일럿 규모로 실증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실규모(full-scale) 실증자료 필요
-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녹색혁신 신기술 적용 설비의 판로 개척** 및 해당 기술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 도출·개선** 추진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환경 신기술 설비 실증을 희망하는 수요기관·공급기업**
 - **(공급기업)** 환경 관련 특허, 신기술 보유 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참여기업,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을 비롯한 환경 신기술 설비 도입 의향이 있는 모든 기관
- **(지원내용)** 공급기업-수요기관 간 매칭, 신기술 적용 환경설비 도입 비용 보조
-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 환경AI·ICT, ⑥ 바이오가스 등 환경 소분야
- **(지원금)** 총 130억원(수행기관* 당 최대 10억원)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공급기업에 비용 보조, 시설·설비 설치 비용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월 19일 ~ 2월 28일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메일(kecomicro@keco.or.kr)** 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ESG기업지원부 (☎ 032-590-4828)



참고 1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신청서(계획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신청서					
과제명					
수행기관	주관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업 종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설비공급기업(ㄴ)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담당자명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비수요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담당자명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컨설팅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사업현황	협약기간 ~ (개월)	예상효과		
	총사업비(비율)	국고보조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100%)	천원 (%)	천원 (%)		
<p>위와 같이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p> <p>.</p> <p>주관기관(설비공급기업) 대표자 (인)</p> <p>설비공급기업 대표자 (인)</p> <p>설비수요기업 대표자 (인)</p> <p>※ 복수의 설비공급기업인 경우, 기업별 대표자 날인 필요</p> <p>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첨 부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부.					

사업 계획 요약

과 제 명			
설 비 명		설 공 급 기 업	(주관) (공급)
수요과제명		분 야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협약기간
금액(천원)				. . . ~
비율 (%)				. . .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 목표

-
-

(지원 분야별 사업목표를 정량적(%수치 등)으로 간략히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5. 예상 감축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참고 2 증빙서류 종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공통)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
2	(공통)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 원본 제출
3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제출
4	(공통)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원본 제출
5	(공통)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 사본 제출
6	(공통) 고용 증빙 자료	• 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제출 대상 : 사업비 중 인건비 계상 과제)
7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증서
8	(공통) 가점 현황 증빙 자료	• 가점 해당 시 제출
9	(공급기업)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	• 특허,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0	(수요기관) 기존시설 주요구성 자료	• 사업부지 내 설치장소를 포함한 개략도
11	(수요기관) 설치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결선도 등	• 과제의 혁신기술(설비) 적용 내용 및 개선 계획 세부자료
12	(공급기업) 설치설비의 사양 파악 자료	• 카다로그 등 규격 및 효율 파악 자료
13	(수행기관)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및 증빙서류	• 기존 운영 현황 자료 및 설치계획에 따른 개선효과 산출자료
14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 주요 설비별 금액이 포함된 견적서 -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설비는 비교견적 포함 제출
15	(공통)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16	(공통)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17	(공통) 자기진단서	• 사업 참여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점검하는 서류
18	(수행기관) 안전보건서약서	• 사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서약서
19	(수행기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관리계획
20	(수행기관) 원가계산서	• 도입하려는 설비의 원가를 검토하는 서류

참고 3 관련서식

**0000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1. 과 제 명 :
2. 설비 수요기관 :
3. 설비 공급기업 :
4.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위 : 천원)

민간부담금 총계(A+B)			
현금	금액(현금)(A=C+D)	선금(70%)(C)	잔금(30%)(D)
			중간점검 이후 30일 이내
현물	금액(현물)(B) ※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주관 기관 :

직인

수행책임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3.3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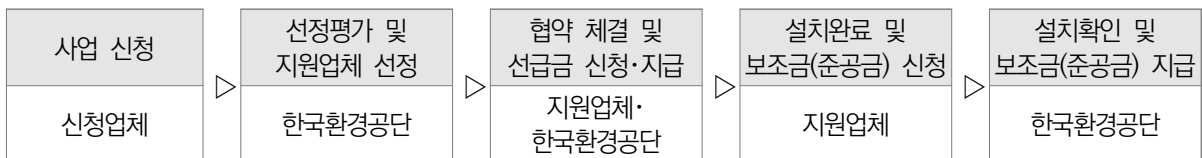
- 2050 탄소중립 및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할당업체의 감축이 불가피하므로 감축규제와 함께 재정지원 확대 필요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지원규모)** '23년 1,313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1,051억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억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162억원
- **(지원내용)** 할당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탄소무배출설비, 공정개선 설비, 전력절감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보조율: 중소 70%, 중견 50%, 유상할당 대기업 30%)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대기업포함)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부사업자의 감축량을 주사업자의 감축실적, 배출권 이관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보조율: 50%)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할당대상업체(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보조율: 50%)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월 9일 ~ (예산 소진시까지 단계별 공모)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신청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 032-590-5616~5619, 5649, 5650)

■ **참고사항**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

참고 1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 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대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
	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⑦ 기타 공정개선	•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
	전력 절감 설비	⑧ 인버터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⑩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교반기, 모터, 버너, 변압기, 팬, 펌프, LED 조명 등) ※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 타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 설비 또는 열 생산 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참고 2 지원 신청서(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장 단위 총괄 신청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장명			업 종		
	업 체 일련번호			사업장 일련번호		
	설치장소 (주 소)	(우)				
	총괄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해당 사업장이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					년
	해당 사업장이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					년
신청설비총괄	총 설비개수	(총 개)		총 감축량	tCO ₂ -eq/yr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착수년월	년 월		준공 연도	년	
설비①	설비명(개수)	(개)	감축량 (tCO ₂ -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설비②	설비명(개수)	(개)	감축량 (tCO ₂ -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설비③	설비명(개수)	(개)	감축량 (tCO ₂ -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p>「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업체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사업장 설비 단위 계획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업체명			사업장명							
설비 담당자/직위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설치장소(주소)										
메인설비명			지원설비 종류	※지원설비 목록 중 택1						
계측설비명			설치 전 계측기간	일						
적용 방법론			산정 활동자료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2"="" type="checkbox/>()</td> </tr> <tr> <td>연간 감축량</td> <td colspan="/> tCO ₂ -eq/yr			투자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컨설팅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조달청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금 미지원 항목(건물공사비, 철거비 등) 포함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포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불이행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해당 여부 ¹⁾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착공 가능	<input type="checkbox"/>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집행 가능	<input type="checkbox"/> 집행 불가능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input type="checkbox"/> 중복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중복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절성 검토
 - 공사 계약 체결
 ※ 단,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가 **설비 설치 계획**

사업개요

업 체 명				사업장명		
설치장소 (주 소)						
지원설비	([부록1] 지원설비 목록 중 택 1)					
신청설비	(주(主)설비만 작성)					
	설비명			용량	수량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2					
	2023					
: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 ~ 20 . . .		총 사업기간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구 분	추진일정	사업내용
협약 체결	20 . .	운영기관과 협약
(조달)계약 체결	20 . .	계약서 작성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설비 측정	20 . . ~ 20 . .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20 . . ~ 20 . .	물품 입고, 공사 등
시운전	20 . . ~ 20 . .	시운전 15일
준공(설치완료)	20 .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당해 연도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함께 제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사업 전



사업 후

㉔ 사후관리 계획

계측설비 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감측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계획	

사후관리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측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측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계획	
유지보수 인력 운영계획	
기 타	(감측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이 있는 신청업체는 해당 내용 작성)



㉔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 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yr)
1					
...					
합계					
당초	(다년도)				
변경					
차이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당초 제시했던 감축목표(기대효과)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감축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사업 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투자회수기간 산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도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라 신청 설비 명세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설비명	계약내용	견적금액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계				
	(물품1) 물품 계약			
	(물품2)			
	(공사1) 공사 계약			
	(공사2)			
	(용역1)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계	(연도)년		(연도)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0%		50%
보조금					
자기부담금					

※ 다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세목	계	설비투자비		산출내역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자산취득비				
시설비				
일반용역비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컨설팅비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수행기관(사업 신청업체) 소개서

수행기관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바 **첨부 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정보 관련 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인감증명서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청설비 관련서류	10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11	신규 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12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3	기존 설비 설치도면, 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14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15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16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사업장의 방법론 단위 계획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신청설비	업체명 (주사업자)			업체명 (부사업자)		
	방법론					
	설비명			지원설비 종류	※지원설비 목록 중 택1	
감축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 ₂ -eq/yr		사업후 배출량	tCO ₂ -eq/yr	
	누출량	tCO ₂ -eq/yr		연간 감축량	tCO ₂ -eq/yr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컨설팅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조달청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					년	
해당 사업장이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					년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금 미지원 항목(건물공사비, 철거비 등) 포함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포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불이행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해당 여부 ²⁾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착공 가능		<input type="checkbox"/>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집행 가능		<input type="checkbox"/> 집행 불가능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input type="checkbox"/> 중복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중복	

2)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절성 검토
 - 공사 계약 체결
 ※ 단,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1) 사업명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
2) 사업 목적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
3) 적용설비 및 기술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가성 등 분석

1) 법적 추가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의무를 초과하여 발생한 실적을 기술
2) 실질적 투자여부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 기술, 증빙자료 첨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 명칭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 기술
1-2) 적용조건 및 타당성	감축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2) 사업의 경제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인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을 구분하여 기술)
2-2) 사업 시행 이전 공정 및 설비 현황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3-3) (예상)사업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후 예상되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3-4) (예상)누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방법론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
3-5) (예상)감축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4) 모니터링 방법론	
<p>〈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p>	



4 신청 설비 명세

㉠ 설비 설치 계획

□ 사업개요

업 체 명				사업장명		
설치장소 (주 소)						
지원설비	<i>([부록1] 지원설비 목록 중 택 1)</i>					
신청설비	<i>(주(主)설비만 작성)</i>					
	설비명	용량	수량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i>(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i>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2					
	2023					
: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 20 . .	총 사업기간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구 분	추진일정	사업내용
협약 체결	20 . . .	운영기관과 협약
(조달)계약 체결	20 . . .	계약서 작성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설비 측정	20 . . . ~ 20 . . .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20 . . . ~ 20 . . .	물품 입고, 공사 등
시운전	20 . . . ~ 20 . . .	시운전 15일
준공(설치완료)	20 . .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당해 연도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함께 제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사업 전



사업 후

㉔

사후관리 계획

□ 계측설비 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 감축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계획	

□ 사후관리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제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제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계획	
유지보수 인력 운영계획	
기 타	(감축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이 있는 신청업체는 해당 내용 작성)



㉔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 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yr)
1					
...					
합계					
당초	(다년도)				
변경					
차이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당초 제시했던 감축목표(기대효과)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감축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사업 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투자회수기간 산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라 신청 설비 명세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설비명	계약내용	견적금액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계				
	(물품1) <i>물품 계약</i>			
	(물품2)			
	(공사1) <i>공사 계약</i>			
	(공사2)			
	(용역1)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계	(연도)년		(연도)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0%		50%
보조금					
자기부담금					

※ 다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세목	계	설비투자비		산출내역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i>자산취득비</i>				
<i>시설비</i>				
<i>일반용역비</i>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컨설팅비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5

수행기관(사업신청 업체) 소개서

□ 주사업자

업 체 명 (사업자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 부사업자

업 체 명 (사업자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6 **첨부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정보 관련 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주사업자, 부사업자)		
	5	사업자등록증(주사업자, 부사업자)		
	6	법인인감증명서(주사업자)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주사업자, 부사업자)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주사업자, 부사업자)		
신청설비 관련서류	10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11	신규 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12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3	기존 설비 설치도면, 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14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15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16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3.4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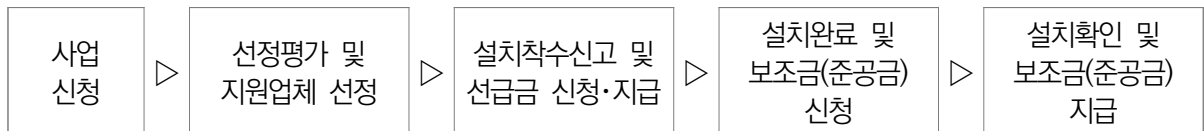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 유도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목표관리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지원)
- (지원규모) 총 1,500백만원(업체당 국고 보조율 50%)
- (지원내용) 감축설비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2월경(예정)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신청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관리부 (☎ 032-590-5211, 5217)

- 참고사항 :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참고 1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1. 탄소무배출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3.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4. 탄소포집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5.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6.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전동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또는 인버터 제어형 전동기로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등
7. 고효율 기기	기존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고효율 버너 등
8. 불소가스 저감설비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9. 공정개선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로 1~8번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10. 기타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 설비 또는 열 생산 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참고 2 신청서류

		접수번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기본정보 (업체정보관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업 종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신청정보	설 비 명					
	계약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체계약		<input type="checkbox"/> 조달청	
	설비 투자비 (천원, VAT제외)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예상감축량 (tCO _{2e} /yr)	
	시공회사명		담당자		전화	
	예상 사업기간		. . . ~ . . .			
<p>위와 같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업체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p>						



㉔

설비설치계획서

□ 설비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치목적	
설치사업추진내용	
추진성과(기대효과)	
자금조달계획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구분	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내용연수	용도 및 기능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설비의 주요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계약체결(조달청 이용)	20 . . ~ 20 . .	계약서 작성
기존설비 측정		전력량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장비입고, 설치공사
시운전·준공확인		시운전 15일, 보조금 신청

라) 절감효과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yr)
1	CO ₂			CO ₂			
2	CH ₄			CH ₄			
3	N ₂ O			N ₂ O			
4							
합계							

※ 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감축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text{회수열량[Gcal/일]} \times 4.1868[\text{GJ/Gcal}] \div 1,000[\text{GJ/TJ}] \times \text{열(스팀 배출계수)} [\text{tCO}_2\text{eq/TJ}]$
사업 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text{회수열량[Gcal/일]} \times 4.1868[\text{GJ/Gcal}] \div 1,000[\text{GJ/TJ}] \times \text{열(스팀 배출계수)} [\text{tCO}_2\text{eq/TJ}]$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마 신청설비명세

□ 집계표

구분	설비명	계약내용명	견적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계약방법 (자체,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1		설비 제조		
2		시공		
3		컨설팅		
합 계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 조달청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설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설비 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합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유형 자산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설계비 (02)	설계비							
건설비 (420)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시운전비							
	컨설팅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

㉮ 사후관리계획

□ 계측기기 일반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 감축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 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 계획	

□ 사후관리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 계획	
유지 보수 인력 운용 계획	
기 타	



㉠

첨부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7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청설비	8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9	신규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0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관련서류	11	기존설비의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자료		
	12	기존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1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근거 데이터(excel 등)		

※ 기업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별지 제4호서식]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3.5 친환경설비투자 용자 지원사업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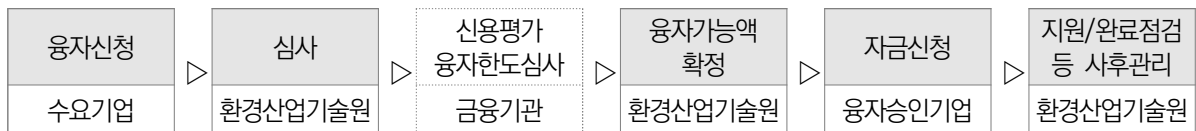
- 탄소배출 수준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탄소 수출규제가 강화 추세**
 - (탄소국경세) 수입품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자국의 규제수준보다 미흡시 관세 부과
 - (RE100, Renewable Energy 100%) 글로벌 대기업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고 천명, 이에 따라 납품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수준에 따라 입찰조건이 변경
 - (탄소배출량 표시제) EU 등은 수입제품에 제품의 전과정(원료채취-이송-생산-사용-폐기/재활용)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표기 요구, '24년 자동차배터리에 규제 적용, 이후 확대 예정
 -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해외 수출규제에 대해 신속 대응 필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반 중소·중견기업도 사전 준비 불가피
- * 대기업이 해외 수출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납품업체에 탄소배출 감축 요구 가능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참고1)
 -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금리) 정책지원용자 금리(분기별 고시, 변동금리, '23년 1분기 3.63%)
 - (지원금) 총 1,0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0억원, 최소 1천만원)
- * 용자금의 10%이내에서 운전자금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www.konetic.or.kr/loan)에서 **상시 접수**
 -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 매뉴얼, 모의신청, 자동 계산 기능(2월 이후) 등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32-540-2180)

참고사항 : 유튜브에서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입력시 친환경설비투자를 포함한 환경부 용자사업 소개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등 안내



참고 1 지원 대상 설비

1. 온실가스배출 저감 설비

대상 시설 구분	지 원 범 위
폐열회수 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차압터빈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인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및 냉동기 포함)
고효율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보일러, 냉동기, 냉온수기, 가스히트펌프, 터보블로워 등
연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가열로 및 열처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기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공정가스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 * 식각·증착 공정의 HFCs(HFC23 제외), PFC, SF₆, N₂O(질산공정에 한함) 등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도,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열원제어, 공조제어 등으로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폐기물전처리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유체커플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온실가스* 포집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공조기, 냉방기 등의 냉매 회수, 저장 장치 포함
신·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 신에너지 :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개질시설, 연료전지 등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폐기물 열분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증기 재압축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자신청을 통하여 기술원 또는 유사 정책사업 수행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은 설비 * (예)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의 감축설비 지원사업, 에너지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온실가스 감축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가. 산업	(1)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6)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붙임 7 참조)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재생에너지, (2) 수소, (3) 암모니아, (4)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5)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6) 수소환원제철, (7) 비탄산염, (8) 혼합시멘트, (9)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10) 제로에너지 건축, (11)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 (12) 바이오차(Biochar), (13)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붙임 7 참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항(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 분야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나. 발전·에너지	(1)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에너지, 수열에너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태양광, (2) 태양열, (3) 풍력, (4) 수력, (5) 해양에너지, (6) 지열에너지, (7) 수열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훈소 제외)
	(3)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가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또는 (2)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훈소 제외)
	(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과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한 가스
	(6)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

(7)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8)	수소 제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9)	암모니아 제조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0)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4)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5)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P2H; Power to Heat)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1)	열에너지 저장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예,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12)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13)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4)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의 이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15)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16)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활용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선박을 도입하거나 해당 교통수단의 충전,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여객선, 도선, 여객 철도 포함
	(3)	무공해 육상·철도 운송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 또는 무공해 철도차량을 도입하거나 관련 차량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택시,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택배, 화물트럭 등 포함
	(4)	무공해 선박 운송	여객 또는 화물의 수상 운송을 위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선박을 도입하거나 무공해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5)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여객 또는 화물의 (1) 육상, 철도 운송에 필요한 전기충전소,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운송 인프라 또는 (2) 수상 운송에 필요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공급시설 등의 수상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무공해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신규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활동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마. 농업	(1)	저탄소 농업	식량, 채소, 과일, 화훼 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1)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2)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 분 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
바. 이산화탄소 포집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이산화탄소의 포집, 처리, 영구격리 및 활용을 위한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또는 영구격리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바이오차* 생산 및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조건에서 300~350℃ 이상의 온도로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서, 토양에 살포 시 토양 내 탄소저장 효과 발생

순환경제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가. 자원순환	(1)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폐자원의 수거·회수 및 선별·분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폐자원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1)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2)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 (3)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재생이용(폐유 정제유, 폐금속 재자원화, SRF,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플라스틱 원료 등), (4)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활용, (5)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폐자원 열분해	폐자원을 열로 분해하여 원료 또는 연료를 만들거나, 그 원료 또는 연료를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나. 메탄가스 활용	(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에너지, 연료, 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운전자금

구 분	지 원 범 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근로자 인건비(사업자 부담의 사회보험료 포함)
생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재료 구입비, 공장·창고·장치·설비 수리비 • 설비 가동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성 부품, 제품 구입비
가동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료, 가스, 유류비 등 공정 가동에 소요되는 에너지, 연료비
해외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현지 고용 외국인 제외) • 현지 영업소,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각종 비용

참고 2 용자 지원 신청서

친환경설비투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주소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중, 대기 *중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 내용	용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용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용자금 취급은행	000 은행 000000 지점		은행 담당자	0 0 0		전화 번호	직접 입력			
<p>상기와 같이 용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 년 00 월 00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p>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 _____ 일, 1일 평균 _____ 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i>100자 이내</i>									
용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용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i>자동합산</i>	<i>자동합산</i>	
구분 ▼	구분 ▼	<i>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i>	<i>숫자</i>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폐열·폐기물·부생가스	폐열회수설비, 가열로·열처리로, 폐기물열분해시설, 폐기물전처리장치, 공정 부생가스이용장치
에너지·연료	에너지고효율장치, 차압터빈시스템, 감축효과 연료로 전환
고효율 동력	인버터, 유체커플링, 증기재압축장치
관리제어	공정개선, 최적운전자동제어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신에너지	수소보일러, 수소정제개질시설, 수소연료전지, 기타 신에너지 이용시설
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태양열시설, 풍력시설, 바이오에너지, 기타 재생에너지 이용시설
포집·처리	이산화탄소온실가스 포집장치, F가스공정가스 처리장치
기타감축설비	기타 감축효과 설비
측량측정	계측기, 계량기, 유량계
토목·건축	설비부지 조성공사, 철골구조물, 건축(가설)구조물, 설계엔지니어링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기계장치, 설계엔지니어링, 철거비용, 기타 비용

참고 3 신청 서류 종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서식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 〈서식 1〉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용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로 등록 ※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용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서식 2〉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용자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3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에서 신청·발급 ※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4	벤처기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해당 기업에 한하여 제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확인발급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mes.go.kr)에서 신청·발급 ※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5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하고 해당란에 기입 필요. 이때 누락, 부실, 부족한 경우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8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9	[별표 3]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종류는 [별표 3] 참조 ※ 서류 미제출 시 점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
10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자금시스템 자료실에서 가이드 및 엑셀틀 참고 ※ 작성 엑셀 파일과 〈서식 5〉 파일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사업 선정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감축설비보조사업 선정 통보 공문으로 대체 제출 가능 - 위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기술원의 검토 절차 생략
11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직접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기성 제품 구매하여 자체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매처(판매처)의 사업자등록증
12	용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직접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13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팸플릿, 사양서 등
14	용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1개월 이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15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16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 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17	고효율 장치 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효율장치 설치 용자신청 경우, 기자재 별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서 제출



참고 4 관련 서식

서식 1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 종류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영업점)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과 담보확보 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 지원 승인 후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위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여신)승인을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정식 대출(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 가능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한도 금액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민간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제 성명: 차장 000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 상 호 :
- 소 재 지 :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용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용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용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 다. 용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 라. 용자금 사용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신청기업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e메일, 휴대폰)
 - 나. 용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 다. 용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용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용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용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 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_____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온실가스 감축 계획 ※ 온실가스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기대효과(연간)	비고 (용자지원 받은 온실가스 저감 시설 기재)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상당량 (tCO ₂ -eq)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상당량 (tCO ₂ -eq)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q)	
1								
2								
3								
4								
5								
합계								

□ 에너지 절감 계획 ※ 에너지·전력 절감을 통한 상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드시 기재

NO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연간)				개선후 에너지사용량(연간)				기대효과(연간)		비고 (용자지원된 에너지절감 설비 기재)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toe)	절감액 (백만원)	
1											
2											
3											
4											
5											
합계											

□ 기타(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대효과 여부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요	
세부내용	

▶ 상기 감축량, 절감량 산출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반드시 “구비서류” 항목에서 등록 제출

3.6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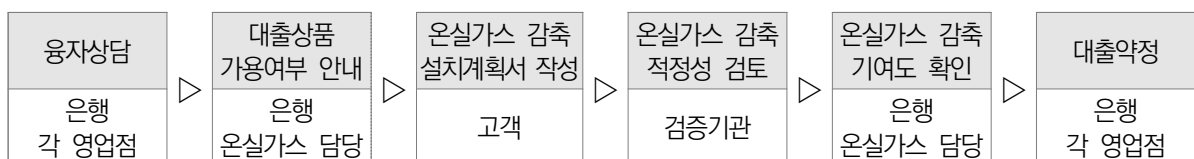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규모 확대
 - ▶ (탄소중립기본법) NDC 최소 기준(‘18년比 35%이상) 설정 이후 NDC 상향안 마련(‘21.10)
 - ▶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감축 수단 발굴 및 관련 지원을 적극 노력
 - ▶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공정 전환과 철강, 석유 화학, 시멘트 등 산업 부문의 친환경 연료 전환, 고효율 기기 대체 등을 통한 감축 방안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 필요
 - * 기준연도(‘18년) 국내 총배출량 727.6백만톤CO₂eq 중 전환·산업 부문은 약 73% 차지
- 녹색금융 추진 계획(‘21.1)에 따라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대출상품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지원 대상·규모

- (지원금) 총 3.5조원 규모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등**
- (지원내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친환경설비투자 지원대상 설비 중 2번)
- (지원방식) 시중 금융기관의 민간자금으로 기업에 저탄소 설비 대출 지원하고, 기업의 우대 또는 감면 금리 50%를 지원하는 방식
- (지원기간) 10년 이내(시설자금)
- (대출한도·금리) 취급 금융기관별 한도·금리 상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문의



■ 사업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32-540-2178, 2177)



3.7 미래환경육성용자(녹색전환)

■ 추진배경

-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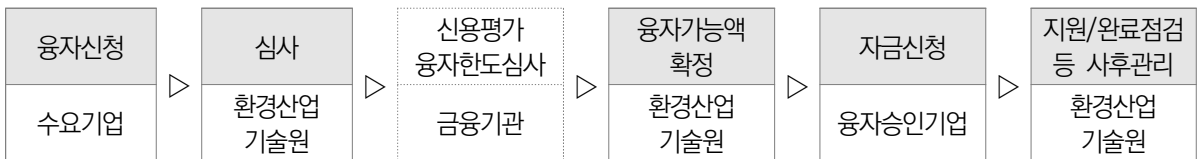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일반기업의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교체 비용 용자 지원
-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금리) 정책지원용자 금리(분기별 고시, 변동금리, '23년 1분기 3.63%)
- (지원금) 총 1,0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0억원, 최소 1천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www.konetic.or.kr/loan)에 공지
-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 매뉴얼, 모의신청 등 제공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32-540-2176, 2177)

■ 참고사항 : 유튜브에서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입력시 용자사업 소개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등 안내

참고 1 지원 대상

구 분	지 원 범 위
대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 및 제29조> 사업장 단독 및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의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제32조> 사업장 대기배출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 <제38조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 <제43조>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 • <제44조>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 <제62조 및 제63조>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 13]의 '2. 확인검사 분야'의 시설·장치 중 아래의 설비에 한한다. (토목공사 비용 불인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공기과잉물) 측정기 및 부속기기 ②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③ 소형 또는 대형 차대 동력계 ④ 매연 포집시설
악취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 및 제8조의2> 악취배출시설의 방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38조의2> 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조> 개인·법인 사업자의 단독 또는 공동 하수처리시설(시행령 제24조)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사업장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공사(용자신청 : 기업, 발주자) • <제15조의2> WASCO사업 공사 비용(용자신청 : WASCO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 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시행규칙 제4조) • <제9조>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 및 제8조의 수질기준 준수·관리를 위한 시설 • <제10조 및 제11조>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부터 하·폐수처리수 또는 온배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수급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 이용하는 기업의 사업장 내 시설비용(자기부담금 포함 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및 제12조> 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배출시설



구 분	지 원 범 위
토양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7조 및 (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시설 - 시행령 제7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 유지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 <제15조의3> 오염된 토양의 정화,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된 토양의 정화·복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정화 -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 비용 포함 • <제19조> 오염토양의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민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시행령 제13조의 사업
소음·진동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 및 제12조>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 방지시설(시행규칙 [별표 2]) • <제22조> 특정공사 시행자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시행규칙 [별표 10])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9호 및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감량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설비 공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의2 및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중간처리시설 및 임시 보관 장소의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및 제12조 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의 옥내화, 덮개시설,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의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사고 예방·억제 및 화학오염 확산 방지·정화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11호(취급시설) 및 제12호(취급),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준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장치·장비
측정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적정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거나 수입신고된 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LDAR(비산배출 관리시스템)

참고 2 용자 지원 신청서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선택(수질 *중, 대기 *중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내용	용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용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용자금 취급은행	000 은행 000000 지점		은행 담당자	000		전화번호	직접 입력	
<p>상기와 같이 용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 년 00 월 00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p>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 _____ 일, 1일 평균 _____ 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00자 이내									
용자신청 환경시설 근거법	근거 법령, 의무 법령 및 조항 기재									
용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용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대기	대기오염집진기, 비산먼지억제시설, 비산배출저감관리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방지시설, 대기 TMS, 적산전력계, 실험실분석용 대기 자가측정기기,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장비, 기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수질	수질오염관리시설, 절수·빗물·중수도설비, 수질 TMS,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실험실분석용 수질 자가측정기기, 기타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수질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토양	토양오염방지시설, 오염토양 정화복원 비용, 기타 토양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토양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소음·진동	소음진동방지시설
빛공해·악취	빛공해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화학물질	화학물질취급안전시설, LDAR(비산배출관리시스템), 기타 유해화학물질 배출방지시설
분뇨·폐기물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기타 폐기물 저감 관련 시설
토목·건축	설비부지 조성공사, 철골구조물, 건축(가설)구조물, 설계엔지니어링
전기공사	배전설비, 환경설비관리제어시스템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기계장치, 기타 비용

참고 3 신청 서류 종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서식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 〈서식 1〉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용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로 등록 ※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용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서식 2〉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용자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3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에서 신청·발급 ※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4	벤처기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해당 기업에 한하여 제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확인발급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mes.go.kr)에서 신청·발급 ※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5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하고 해당란에 기입 필요. 이때 누락, 부실, 부족한 경우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8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9	[별표 3]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종류는 [별표 3] 참조 ※ 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
10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기성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11	용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12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릿,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13	용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1개월 이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14	건축 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에서 지원가능한 건축구조물로써 용자금 지원 신청 시 용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에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15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16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 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17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감량화 시설에 대한 용자금 지원 신청 시
18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취급, 제조 등에 대한 적법 사업장 확인



참고 4 관련 서식

서식 1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 종류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영업점)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과 담보확보 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 지원 승인 후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위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여신)승인을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정식 대출(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 가능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한도 금액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민간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제 성명: 차장 000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 상 호 :
- 소 재 지 :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용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용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용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 다. 용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 라. 용자금 사용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신청기업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
 - 나. 용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 다. 용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용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용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용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_____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